

#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민석의원 대표발의)

## 검 토 보 고

### I. 주요내용

-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 또는 시·군·구는 결핵검진등의 실시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6조제2항 신설).

### 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박 혜 진)